

의안번호	2220914
의 퇴 인	김상훈 의원
회 답 일	2026.9.28.
추 계 번 호	26E4385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가상자산 양도·대여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2년 유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법률 제17757호 부칙 제1조·제5조·제20조·제22조	- 가상자산 양도·대여소득 등의 과세 시행시점 2년 유예 (현행) 2027년 1월 1일 → (개정안) 2029년 1월 1일 ※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가상자산소득 및 원천징수 관련 적용시기도 함께 변경
2	제37조제5항·제6항 (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)	- 과세 전 보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 변경 (현행) 실제 취득가액과 2026.12.31. 시가 중 큰 금액 (개정안) 실제 취득가액과 2028.12.31. 시가 중 큰 금액 -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산정 적용 시기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변경
3	법률 제20615호 부칙 제1조제4호·제12조	- 거래자료 제출명령 및 과태료 관련 시행·적용시기 2년 유예 (현행) 2028년 1월 1일 → (개정안) 2030년 1월 1일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법률 제17757호 부칙 제1조·제5조·제20조·제22조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제37조제5항·제6항 (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법률 제20615호 부칙 제1조제4호·제12조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양도·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변경하여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-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양도·대여소득 과세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세수 규모를 전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만,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세수효과 추정이 곤란함
 -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어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, 이후 3차례 시행이 유예됨
 - － (1차 유예) 2022→2023년, (2차 유예) 2023→2025년, (3차 유예) 2025→2027년
 -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아직 과세되지 않아 양도금액, 취득가액, 대상인원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, 가상자산 양도·대여 소득 과세시행 유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 - － 거래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의 시행 유예에 따른 수입 감소액도 향후 위반 및 부과·징수액을 합리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추정하기 어려움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